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님!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도문열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“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1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구역 안 감면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.

□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,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나, 서울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.

□ 여의도 일대가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,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때문에 해외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글로벌 금융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건의안은,
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'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한다'는 내용을 삭제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, 앞서 말씀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